

대한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반건설업체에 안내

기계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과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에 규정된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관련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문공사	급배수 · 공동구 · 지하저수조 · 냉난방 · 환기 · 공기조화 · 자동제어 · 가스 · 배연설비	2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관련 [별표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문공사	급배수 · 공동구 · 지하저수조 · 냉난방 · 환기 · 공기조화 · 자동제어 · 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 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 공사		○	
	다. 덕트설비 공사		○	
	라. 배관설비 공사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 공사		○	
	나. 온수공급 설비 공사		○	
	다. 배수·통기 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 공사	○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 공사		○	
	나. 소화설비 공사		○	
	다. 배연설비 공사		○	

※ 〈주기〉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을, 공동주택공사는 주택법을, 그 이외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함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칙

〈회계 41301-1684, 2002 11. 1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 관련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오니 귀 부처(기관)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 함.
-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 대로 계약서상 기간을 조정하여야 함.

사 본

“우리국토 아름답게 - 우리교통 편리하게”

건설교통부

취 급

우427-71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4-9051	/전송 503-6439
건설경제과	과장 한만희 사무관 김현정	담당자 권오혁 kwoh@moct.go.kr

문서번호 건경58000-1133
 시행일자 2002.10.18 (5년)
 공개여부 (공 개)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제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교량·터널·댐·대형공공건축물 등의 골조 또는 구조상 주요부분 등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전문공사인 미장·방수·설비·토공·철콘 등의 경우 1~3년까지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원수급업체에서는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령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무리한 하자담보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공사수주 곤란을 우려하여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부에도 관련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기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되, 특히 원·하도급 전문공사에 대하여 공정별로 구분이 가능한 것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



수신처 : 가(41, 46, 47, 73), 나, 다, 병(1~8, 22~24), 정(1~15), 무(4~6, 11, 15, 22, 23, 26), 마(14~17, 21),